

술적 자원을 보고 외국인 투자가 유인될 수 있도록 기술적 자원을 확충하고, 역으로 이러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술적 자원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소위 순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과감하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은 아님). 이렇게 볼 때 결국 우리기업의 기술개발전략은 궁극적으로 두번째를 겨냥한, 즉 전략적 제휴가 가능할 수 있는 독자적 기술영역의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다른 한가지는 이제는 세계화적 기업(Global Firm)을 지향한 소위 기술개발의 세계화적 전략(Global strategy)을 구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술의 세계화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중의 하나는

연구개발센터를 실질적 의미(투자, 인력, 정보 등)에서 비교우위적 요소를 갖고 있는 타국에 어느 정도 분산 배치하고 있는가이다. 우리기업은 21세기를 대비하여 연구개발관련 자원측면에서 최적 기지를 선택하여 과감한 투자를 전개하고 이를 네트워크화해 나가는 데 주저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단순한 생산자원의 비교우위가 아닌 연구개발자원의 비교우위까지를 고려한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적 전략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제 공동연구에의 참여문제라든가 타국 연구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문제 등이 향후 TR에서 주요 의제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 자

세로 이를 역이용할 수 있는 사전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기업·일반국민 모두가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세계화라는 흐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UR과 TR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소위 진입장벽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술혁신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술개발전략을 모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부정적인 한쪽 면만 보고 투덜대기엔 우리에게 너무도 아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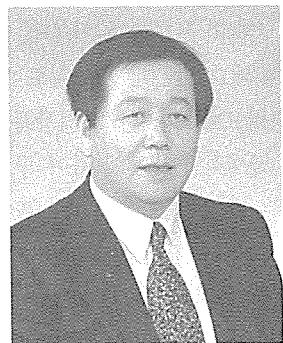
기획
특집
(4)

국제화시대, 우리과학기술의 나아갈 길

GR대비 전략

沈 在 坤

〈환경처 폐기물정책과장〉



**환경기준 준수가 대외경쟁력
민간과 정부가 역할분담해야**

정부·민간 역할재정립 필요
최근 UR파동에 이어 도하 각 언론에서는 그린라운드(GR), 블루라운드

(BR), 기술라운드(TR), 경쟁정책(CP) 등 소위 뉴라운드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고 있는 새로운 국

제교역질서는 우리의 산업, 교역, 환경 등 경제사회전반에 걸쳐 일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느낌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고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정부의 조치내용을 보면 국제여건변화로 인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지구촌 환경보존을 위한 산업구조의 개선유도, 시장개방 충격을 최소화하고 해외진출을 통한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 국제화 개방화에 맞는 국내제도·법령 및 관행을 개선하여 쌍무적 통상문제 및 지역불리화에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경제사회의 당면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환경과 무역을 연결하는 GR의 경우가 이를 뉴라운드와 어떻게 연결되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나타난 일반적인 사항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한편 새로운 개념의 접근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GR은 환경보호관련 통상문제

아직은 개념과 정의조차 명확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들 앞다투어 이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적으로 유해한 산업경제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의 틀이 구체화되어 가는 움직임을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UR이후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로서 GATT의 제9차 다자간협상에서 제시된 환경보호와 관련된 통상문제가 바로 GR의 시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GATT는 '94년 4월15일 UR최종협정문을 승인하는 모로코의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환경에 관한

Work Program'을 승인함으로써 이제는 무역과 환경이 핵심이 되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아직은 UR협상참가국 1백25개국중 WTO 설립협정에 서명한 나라는 80개국밖에 안되지만 '95년 1월 발효예정인 WTO협정의 이행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마라케시 각료회의는 WTO 창설을 선언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 of the WTO)를 설치하였다. 또 95년 초에 열릴 WTO 제1차 이사회에서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를 공식적으로 발족시키기로 이미 내정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발족될 무역환경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첫째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무역조치와 환경조치간의 조화방안을 마련하고 둘째로 92년 6월 리우환경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의제21]에 명시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다자간 무역규제조치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을 설정하여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번째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규제조치를 위한 효율적인 감시방안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일련의 조치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GATT체제에 의한 UR협상이 공식적으로 종결되고 WTO에 의하여 무역과 환경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국제질서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바로 GR의 대두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선·후진 GR협상 곧 본격화

앞으로 WTO내의 무역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보호문제를 가지고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제품생산기술이나 규격을 제한하는 비관세장벽을 설치하는 입장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우리와 같은 개도국과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UR과 다른 개념의 GR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무역질서에 환경보호를 담보로 한 새로운 장대가 등장하여 이러한 장대를 적용하는 경제활동의 파이가 점차 커져감을 뜻하는 것이다.

가령, 미국의 기업은 환경보호시설을 설치운영에 얼마를 투자했는데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기업이 그만큼의 투자를 안했다면 그만큼의 원가절감에 대해 덤핑행위로 간주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바로 환경관세의 개념이다. 이제는 환경기준을 위한 준수비용이 그 나라의 대외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환경정책 강화내용과 규제기준의 차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환경마크 인증여부, 포장재질과 과대포장 등에 의한 개별적인 무역규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절실히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환경적합성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물품중심의 규제에서 최근에는 PPMs(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로 불리우는 물

품 생산과정에 대한 규제와 함께 상품이 개별적으로 갖는 수명과 이를 처리하는 공해비용 등을 따지는 전주기적 관리(Life-cycle management of trade products)를 철저히 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으며 그 대상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화하여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요즈음 우리들에게 ISO 18000시리즈로 알려지고 있는 국제환경인증제도이다. GATT내의 기술장벽제한협정(TBT)에 의한 표준협정에서 발전된 ISO 18000시리즈는 종전의 ISO 9000시리즈보다도 강제성이 높고 제품뿐만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제환경인증제도가 국제환경 협약과 연계하여 GR을 형성하고 UR

과 GR을 양축으로 하는 WTO 체제가 구축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환경문제 경쟁력개념 도입해야

우리는 이상과 같은 국제적인 파고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수요를 놓고 정부와 민간부문사이의 역할분담, 그리고 민간부문내에서도 기업과 가계간에 효과적인 역할분담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자율개방시대에 효과적으로 환경문제를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경쟁력 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환경정책기조는 정부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의 환경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민간주도라 함은 기업을 주축으로 한 경제주체들이 자발

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아래 환경문제를 개선해 나감을 의미한다. 바로 이와 같은 민간분야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유발시켜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몫이 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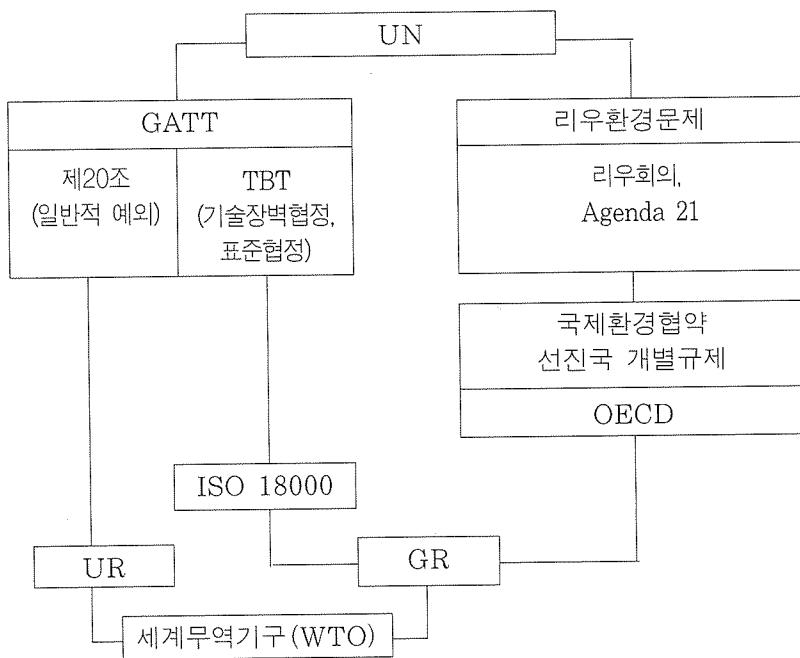
그 다음으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외국에 비해 취약한 공급환경기초시설 즉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이다. 이와 같은 시설이 부족하게 되면 물, 공기, 토양 및 생태계와 같은 환경재(Environmental goods)의 파괴를 초래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엄청난 사후 처리비용을 유발시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또 이 문제가 무역과 환경이 신국제 교역질서의 새로운 잣대로 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중요한가를 우리는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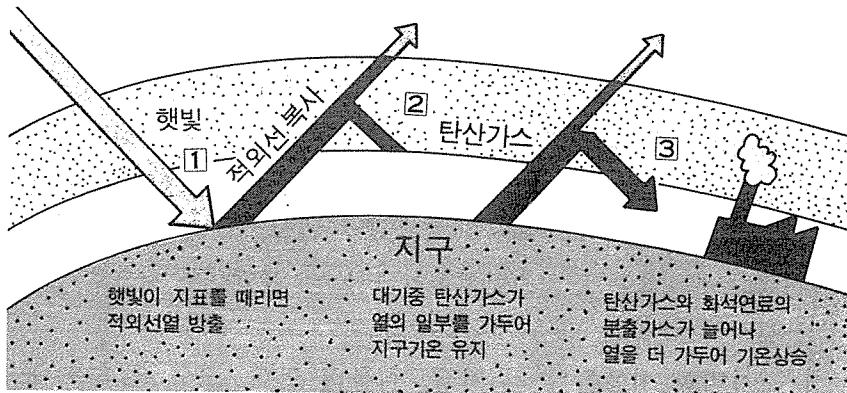
정부, 처리시설 확보해야

우리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외국은행이나 자본시장에서 돈을 빌려올 때 선진국과 같이 안정적인 나라에 비해 빌리는 돈의 금리를 똑같이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돈을 빌리고자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경제기반, 정치적 안전성 등에 대한 위험부담이 없어야만 이자율도 싸고 상환기간도 길게 하여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과 환경문제도 이와같은 관점에서 보면, 환경적으로 안전한 나라가 되어야만 국제교역질서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 교역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이며 환경적으로 안전한 나라의 기준은 하수처리율이나 쓰레기 위생매립

◇ UR, GR과 ISO 18000의 관계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의 파도한 소비는 지구환경을 위태롭게 만든다. 그림은 온실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율이 어느 정도인가에 의해 판단될 것 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장, 폐·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 것이다. 즉 국제간에 매겨진 환경관세의 척도와 기준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환경기초시설에 의한 위생 처리율 수준이 환경위험부담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미리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점은 환경선진국과 후진국에 대한 구분과 등급의 기준으로서 이 이상 더 확실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누가, 얼마를 어떻게 부담하여야만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소요재원에 대한 염출은 기존의 제도와 한정된 정부의 재정구조내에서는 어려운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환경투자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웃 일본의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1965년도의 가장 극심한 오염상태를 20년이 지난 85년에 이르러 비로소 환경기준치에 접근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었는데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자원투입량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일본은 90년대에 와서도 환경 위험부담률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의 고비를 늦추지 않고 GNP의 0.3~0.4%(국가 총예산대비 2% 이상)를 환경에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오수(雨污水)분리에 따른 하수처리율이 47% 정도밖에 안되는 실정이며, 이러한 하수처리율을 1% 올리는데 약 3조 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에게 비쳐볼 때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너무 무감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반성해보아야 한다. 이제 UR을 등에 업고 밀어닥칠 국제환경규제 등 국내외 환경문제는 막다른 길목에 와 있다. 따라서 한두가지의 정책결정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며,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국민, 기업과 더불어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오염은 유발자가 곧 피해자

오염문제는 유발자가 곧 피해자라는

인식하에서 모든 경제활동주체들이 외부비용을 내부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정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태부족한 공공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간자본이 참여해야 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국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사례에서 찾아보면 쓰레기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인 지가 하락 등 금전적인 직접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인 소득보상은 정부재정의 역할이 감당하기가 곤란한 것이다.

따라서 소득보상적인 차원의 주민욕구를 민간자본이 적절히 감당하고, 민간자본의 창의성과 효율적인 경영마인드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이용을 활성화하여 민간투자영역 확보의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민간자본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면제, 세제금융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간투자자에게 어느 정도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현재 관련부처 사이에 사회간접자본 시설(SOC)의 범위에 환경기초시설을 포함시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의 자본참여가 원활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꼭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ST